

2025년도 경기도 에너지 용자지원 사업 안내

2025년 경기도 에너지 용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하니, 내용을 참고하여 용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4일

경 기 도 지 사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
□ 목적

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한 저금리 용자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

□ 지원대상

-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(자가용, 상업용)을 설치하려는 자로서
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(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용량 합산)
 - 도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
 -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, 인버터를 설치할 자
- * 상업용의 경우 '24. 10. 1.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발전사업자
(기준일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. 단, 既 준공사업 제외)
- ** 자가용의 경우 '24. 10. 1. 이후 착공에 한함
- ***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

□ 지원 제외대상

- 휴·폐업 중인 자
- 국세,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또는 융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
-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융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- 당해 연도에 융자추천서를 받은 뒤 취소 의사를 밝힌 자

□ 지원방식

- 민간 금융기관 융자한도 및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방식으로 지원

□ 지원내용

-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(VAT 제외)
- 지원한도 : 설치자금의 85% 이내
- 지원순서 : 은행 대출 시행 순으로 함
 - ※ 추천서 순서가 아닌 은행에서 최종 대출 시행 순 지원하며, 예산 소진 시 종료
- 접수마감 :
 - (추천서 접수) : 시작일 ~ '25. 11. 30.
 - (은행 접수) : '25. 12. 마감접수일(은행 접수처(각 지점) 문의)

□ 융자조건

- 융자금리 : **1.8%**(변동금리) *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규모 : **22억원**
- 융자한도 : 신청자 당 최대 300백만원
- 융자기간 : 8년(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)
- 취급은행 : 하나은행
- 담 보 등 :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

* 융자지원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, 발급된 추천서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에 한하여 유효함.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경기도 산단 RE100참여기업 우선 지원 후 통합 모집
 - (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) '25. 4. 7. ~ 4. 25.(3주)
 - * 산단 RE100 참여 관련 문의 : 경기도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 031-985-6733
 - (통합) '25. 4. 28. ~ 11. 30.(상시모집, 자금 소진 시 종료)
 - * 자금 소진 시 융자지원 종료, 사업 포기 등 잔액 발생 시 순차지원
 - ** 통합신청기간은 산단RE100 참여기업 포함하여 일반접수자 모두 신청 가능
- 접 수 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 전환 누리집*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- * <https://www.ggenergy.or.kr>
 - ** 진흥원 에너지 전환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 문의는 신청문의 연락처 참조
- 구비서류 : 붙임 참조 * 담보조건은 은행 협약조건에 따름
- 신청문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☎접수·상담처: 031-985-0566, 996-8393)
경기도 에너지산업과(031-8008-6034)
- 대출문의 : 하나은행(접수 및 상담: 각 영업점('25. 4. 7 ~))

□ 용자 반환 대상

-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※ 사업계획 변경 시, 변경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
- 목적 외의 용도로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

□ 의무사항

-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계획서의 설비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고, 변경 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.
-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용자 한도액의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.
- 신청 후 추천서 발급 결정이 난 후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.
- 용자 승인은 경기도 자체 심의에 의하며, 심의결과에 따라 용자 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.
- 용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,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시 용자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음.
- 용자 지원 대상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,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'완료보고서'[별지 제8호 서식]를 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용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추천 대상자로 선정, 승인 받은 때에는 용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, 향후 3년 간 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